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286
----------	-------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2211343)	2025.07.0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 위원회('25.09.17.) 상정·제안설명·검 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6.08.26.) 상정·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김성원의원 (2220528)	2026.08.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6.08.26.) 상정·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8.26.)는 이
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
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나.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계속 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 다.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 및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을 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있는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그 미활용 군용지를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u><신 설></u>	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을 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

<신 설>

질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있는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그 미활용 군용지를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

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

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
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
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유재
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
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